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49
----------	-------

발의연월일 : 2025. 12. 1.

발 의 자 : 신장식 · 최혁진 · 강경숙
서왕진 · 차규근 · 김선민
한창민 · 박은정 · 김준형
이해민 · 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지역축협 등의 자산·사업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등의 감사를 받되, 자산 등이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4년에 한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에서 매년 30건 이상의 횡령·배임·부당대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최근 5년간 그 규모는 65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내부통제만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농업인과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조합의 특성상 회계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조합의 자산 총액 기준을 3백억원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제173조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1항 중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를 “기준에”로 한다.

제1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3조의2(과태료)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의2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 규정(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u>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u>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u>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매년---</u> ----- ----- ----- -----.
② 제1항의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u> 미달되는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장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 <u>기준에</u> ----- ----- ----- ----- ----- -----.
③ (생 략) <u><신 설></u>	③ (현행과 같음) <u>제173조의2(과태료)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의2에 따</u>

	<u>큰 감사인의 회계검사를 받지</u> <u>아니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u> <u>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	--